

총체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상사적 파장을 탐색하되, 먼저 기계에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 다음에 산업 사회에 대한 독특한 인문적 비판의 맥인 '문화와 사회' 전통을 검토함으로써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인문적 전통을 조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지막 종착점을 인문적 담론에서 찾은 것은, 그것이 경제학적 논의로 시작한 우리의 연구의 정반대 지점이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조의 구도 속에서 산업혁명의 역사가 함축하는 미래에 대한 충고를 찾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의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II. 산업혁명

양동휴

1. 정의의 문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말~19세기 초를 계기로 영국의 경제가 혁명적인 변모를 겪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본질적인 단절이었는데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모키르(Mokyr 1985, 1993)의 분류가 비교적 명쾌하다. 토인비(Toynbee 1884)에 의해 시작된 '사회적 변화설'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중시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분배, 또한 생산요소들의 배분이 중세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산업조직설'은 구래의 기능공 중심 또는 선대제 생산으로부터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이며, 유동자본보다 고정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노동자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이 학설은 마르크스(Marx 1867), 망투

(Mantoux 1928) 등에 의해 대표된다. 란데스(Landes 1969)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진보설'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혁신, 각종 기계의 발달, 합성원자재의 등장 그리고 공장생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잡한 기술진보를 산업혁명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란 기술적 창조성(technological creativity)에 의해 추진된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Mokyr 1993, p. 17). 한편 쿠즈네츠(Kuznets 1966), 로스토헤우(Rostow 1960)류의 수량경제사가들은 국민소득, 자본형성, 노동공급의 양적 성장이 급속히 가속된 것을 산업혁명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거시경제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편의상의 시도이며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른 학설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퍼킨(Perkin 1969, p. 3)의 것일 텐데 그는 산업혁명을 "인간의 생활수단에 대한 접근방법의 혁명"이요, 인간이 "생태적 환경을 통제하는 데에서, 자연의 독재와 인색함으로부터 도피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18세기 말엽의 '혁명'의 존재를 회의하게 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은 지역적, 그리고 부문별로 극히 제한된 점진적 현상이었으며 그 효과도 작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기간 동안, 특히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확대의 대중을 담당한 것은 선대제 농촌수공업의 확산이었으며 공장제 생산의 기여는 미미하였다. 후술할 바와 같이 1인당 총생산성장률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있던 수치를 훨씬 밑도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나 합성원자재 그리고 기계의 이용은 산업혁명 기간이 훨씬 지난 후까지도 그다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해석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Wrigley 1988). 가장 빠른 생산성 향상을 보인 면방직공업의 경우에도 증기기관의 이용은 매우 느린 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정신이나 부르주아 멘탈리티도 이 당시에 급속히 퍼진 것이 아니고 귀족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도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Clapham 1930; Braudel 1984). 이와 같이 산업혁명을 극히 제한되고 점진적인 변화로 보는 견해들은 학설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성장지향적인 풍토와,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진국의 '도약단계'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원용하려는 고조된 관심이 7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후퇴하고, 이에 따라 '낙관론'적 역사해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Cannadine 1984).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현안으로 떠오르는 '역사에서의 연속과 단절' 논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편이 옳으리라 생각한다.¹⁾

어찌 되었든 산업혁명의 '혁명성'은 변화의 속도보다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지역적·미시적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속적이고 불가역적·누적적이라는 사실이 대변하고 있다. 당시 영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1760~1830년간 거의 두 배로 증가) 1인당 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이해가 가며, 또한 농업에

1) 주변환경이 역사가의 연구주제 선택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료해석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을 수 없다. 또한 영국 초기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앤더슨(Anderson) 대 바렛 브라운(Barret Brown)의 논란도 참조하라(Brown 1988, Ingham 1988).

서 상공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다른 '혁명'들과 성격이 판이하다 하더라도 이미 100년간 사용되어 온 개념을 포기한다면²⁾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2. 성장률 및 생산성추계와 그 함의

산업혁명기의 성장률 및 생산성추이는 1962년에 발간된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가 20여년간 가장 믿을 만한 수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1인당 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이 1700~60년 0.45%, 1760~80년 -0.04%, 1780~1801년 1.08%, 1801~1831년 1.61%로서 산업혁명 기간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가속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통계처리방법의 발달로 그와 같은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점차 통념화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산업혁명의 단절성을 부인하는 바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하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도록 하자. 우선 주로 크라프츠(Crafts)에 의해 재추계된 수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리글리와 스코필드(Wrigley and Schofield 1981)의 인구추계, 린더트와 윌리엄슨(Lindert and Williamson 1982, 1983a)의 직업구성자료(Social Table), 페인스틴(Feinstein 1981, 1988a)의 자본형성추계 등이

2)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경제사의 극우파 근본주의 아야톨라(Ayatollah)"라고 혹평하는 학자도 있다(Cameron 1991, p.1165).

[표 1] 연평균성장률 (%)

		최신 추계		Deane and Cole	
		GDP	1인당	GDP	1인당
England and Wales	1700~60	0.69	0.31	0.66	0.45
	1760~80	0.64	0.01	0.65	-0.04
	1780~1801	1.38	0.37	2.06	1.08
Britain	1801~31	1.90	0.50	3.06	1.61

자료: Crafts(1985a), Crafts and Harley(1992) 및 본문 참조.

다. 여기에 각 산업의 가중치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고 각 수치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지수 채택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선 산업생산지수 자체가 훨씬 완만하게 성장하는 결과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생산 역시 인구추계와 자본형성 추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농업 부문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농업생산성장률도 재추계할 필요가 있었다(Crafts 1985a). [표 1]은 크라프츠(1985a)의 [표 2.11]에서 철강, 면화, 건설가중치의 재수정(Crafts and Harley 1992)과 상업 부문 계산착오의 정정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하다는 국민소득성장률을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신 추계가 딘과 코울의 추계에 비해 첫째,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따라서 소비수준의 증가나 생산성향상 정도도 낮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후 생활수준논쟁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업생산증가가 1760년 이전에 이미 상당했다는 것(표 자체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셋

제, 성장률의 가속이 비교적 완만했다는 것, 넷째, 성장률이 연 2% 정도로 지속적이 된 것은 182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추계가 산업혁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로 혁명적인 요소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환, 공업화, 도시화, 국제경제 내에서의 역할 급변 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계는 단지 '도약단계'를 거친 후발공업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Crafts and Harley 1992).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점진적 성장추계는 가격지수문제, 가중치, 지역별 특수성, 제한적인 모습이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비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것은 못 된다고 할 수 있다(Hoppit 1990; Jackson 1992; Berg and Hudson 1992 등). 다만 면직물가격 하락속도가 기존 연구결과보다 훨씬 컸다는 주장은 생산성이 그만큼 더 빨리 상승하였음을 시사하며 면직의 가중치를 생각할 때 총산업생산 증가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아직 더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판단된다(Cuenca Esteban 1994). 한편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 추세성장 논의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듯이 보여 그야말로 "필자들끼리 e-mail로나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Greasley and Oxley 1994; Crafts and Mills 1994, 1995; Honeyman 1992). 어찌 되었든 새로운 추계쪽을 버리고 이제는 دن과 코올의 추계로 돌아가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 추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계산이 가능하면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을 각 요소로 나눈 요소생산성들의

가중기하평균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라 부르는데, 이는 집계생산함수의 존재 여부, 각 요소의 측정문제, 요소가중치의 결정문제, 규모의 경제 여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Solow and Temin 1985; Abramovitz 1993)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가

$$Y = AK^{\alpha}L^{\beta}$$

라 하면

$$TFP = A = \frac{Y}{K^{\alpha}L^{\beta}}$$

가 되고 생산함수의 성장률 표현은

$$\frac{dY}{Y} = \frac{dA}{A} + \frac{\alpha dK}{K} + \frac{\beta dL}{L}$$

이 되어 각 요소 및 TFP의 변화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계산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장의 원천

(연율, %)

	dY/Y	dK/K 에 의한 부분	dL/L 에 의한 부분	TFP 성장	TFP 비중
1700~60	0.7	0.5 × 0.7	0.5 × 0.3	0.2	29
1760~1801	1.0	0.5 × 1.0	0.5 × 0.8	0.1	10
1801~31	1.9	0.5 × 1.7	0.5 × 1.4	0.35	18

자료: Crafts(1994), p. 51.

[표 3] 1인당 성장의 원천 (연율, %)

	연평균 1인당 성장률	1인당 자본 장비율	TFP	TFP가 차지하는 비중
1760~1800	0.2	0.06	0.14	70
1800~30	0.5	0.09	0.41	82

자료: 본문 및 Mokyr(1993), p. 25.

이것이 크라프츠와 할리(Crafts and Harley 1992, p. 718)로 하여금 TFP의 중요성이 자본형성보다 덜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회계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노동단위당 또는 1인당 성장률임이 분명하므로 1인당 성장의 요인을 원천별로 나누어 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전기간 동안 1인당 성장의 거의 모든 부분이 생산성향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성장률이 이전에 믿어졌던 것보다는 낮았지만 그나마의 성장은 거의 전부 TFP 증가에 의한 것이다. 물론 TFP가 곧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해명되지 못하는 'residual' 이 전부 TFP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기술진보의 척도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부분(ignorance)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기술진보를 포함하여 측정오차,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 규모의 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공업국이나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패턴과 확연히 다르게 자본형성보다 TFP의 역할이 컸음은 영국 공업화 과정의 특수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³⁾

산업 부문별로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표 4] 각 산업 부문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기여도(1780~1860) (연율, %)

	가중치	McCloskey		Harley	
		생산성	기여도	생산성	기여도
면 직	0.070	2.6	0.18	1.9	0.13
우스테드	0.035	1.8	0.06	1.3	0.05
모 직	0.035	0.9	0.03	0.6	0.02
철 강	0.020	0.9	0.018	0.9	0.02
운하 및 철도	0.070	1.3	0.09	1.3	0.09
해 운	0.060	2.3	0.14	0.5	0.03
근대 부문 합계	0.290	1.8	0.52	1.2	0.34
농 업	0.270	0.45	0.12	0.7	0.19
기타 부문	0.850	0.65	0.55	0.02	0.02
총 계	1.410		1.19		0.55

자료: McCloskey(1981, p. 114), Harley(1993, p. 200).

도 추계가 계속 수정되고 있다. [표 4]는 1780~1860년 기간 동안 맥크로스키(1981)의 추계와 최근 추계인 할리(1993)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총생산성 향상률이 하향조정되었으므로 독립적

3) Berg and Hudson(1992)은 Crafts 등이 노동투입을 성인남성에 국한시켜 여성 및 아동노동을 간과하였으므로 이들의 TFP 계산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추가노동투입을 감안하면 TFP의 상대적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또한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의 유용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아직 이 모형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사해석에 응용함이 너무 이른 느낌이 있다(Crafts 1995; Rebelo 1991; Solow 1994).

생산성향상
기여도
25%

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라 차액방식으로 얻은 '기타 부문'의 기여도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테민(1996)은 같은 기간 직물이나 철강 이외에 기타 제조업의 수출액이 상당하였다는 자료를 토대로 '기타 부문'에도 국제적 비교우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생산성향상이 면직, 철강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기보다 산업혁명기의 기술진보는 광범위한 부문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고전적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기타 부문의 기여도 추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그의 [표 2]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1794~96년에서 1814~16년 사이에 면직, 모직, 철강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의 총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서 28%로 떨어진 점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산업혁명의 원인

산업혁명의 원인을 구명하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이며 백과전서적 접근으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Hartwell 1975). 산업혁명이 어떤 점에서 혁명적인가를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문제의 성격도 달라짐은 물론이다. 우선 '클레오파트라'의 코'식의 필요조건 논의는 역사해석에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자. 그렇다고 조건부확률론 — 단순한 우연이 아닌 — 과 일단 선두주자가 되면 선발자의 이점이 누적적으로 자기재생산된다는 이론으로 영국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은(Crafts 1977) 사학자들의 오랜 연구관행을 벗어난다. 요즈음은 빛이 바랜 발전단계설이나 선행조건설, 또는 이의 변형인 거셴크론(Gerschenkron)가

설 등도 영국의 선발성, 산업혁명의 시기 등을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는 듯이 보인다. 복잡한 사건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Landes 1993).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원인이라는 문제는 왜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아니고 영국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어 묻는 쪽이 가장 적절한 접근인 것 같다. 다시 말하여 18세기 영국이 여타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그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因果의 오류(post hoc ergo propter hoc)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나 별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자연자원 특히 석탄의 풍부, 섬나라의 이점, 전쟁에 의한 파괴로부터 제외됨, 타고난 국민성 등등은 쉽게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몇 가지 가설만 열거한다면 우선 분할상속으로 토지경영규모가 계속 영세해 갔던 프랑스에 비해 장자상속제를 고수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에 의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이 가능하였고, 차남 이후는 새로운 경영계층에 참여해야 했다는 점(Landes 1969), 토지재산에 기반을 둔 '열린' 귀족제가 1660년 왕정복고 이후 정착하여 물질적 부와 정치적 권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Perkin 1969),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 물론 조세부담률을 보면 1788년 당시 프랑스가 GNP의 6.8% 정도임에 비해 12.4%로 월등 높았으나 자의적인 부과가 아니라 오래전(명예혁명?)부터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다는 것(Weir 1989; North and Weingast 1989) 등이다. 중상주의의 성격만 하더라도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것으로 무역규제 이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다는 점 등이다. 정부정보소가 없어도 도로, 운하 등의 정비로 일찍 국내시장이

통일되었다는 면도 강조되고 있다(e.g. Braudel 1984). 이 외에 영국봉건제의 역동성, 시민혁명, 17세기 위기의 이른 극복(Dobb 1946; Hobsbawm 1954)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산업혁명을 기술진보와 거의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영국이 교육이나 과학에서 앞서지는 않았지만 숙련공, 기능공들의 층이 두텁고 이들의 교류가 활발하여 소위 소발명(microinvention)에 비교우위가 있었다고 한다(Mokyr 1994).⁴⁾

이와 같이 영국의 특수성을 단편적으로 부각시키는 시도 이외에 소위 체너리와 서킨(Chenery and Syrquin 1975) 방식을 사용하여 영국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다. 크라프트(Crafts 1984, 1989)는 19세기 유럽 각국의 통계로부터 1인당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적(normal) 구조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는 각 산업간 노동력 배분과 소득창출의 구성뿐 아니라 총지출에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 출생률, 사망률, 취학을 등의 변화까지를 관찰대상으로 삼았으며 영국의 사례를 19세기 유럽의 평균적 변화와 대비시킴으로써 영국 공업화 패턴의 특징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경우는 같은 소득수준에 달했던 유럽평균(norm)과 괴리가 지대하여 영국의 선례를 후발국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국 공업화가 매우 특이하고 유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가

4) Microinvention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미미한 부가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macroinvention은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껏 알려지지 않던 신기술을 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증기기관, 방적기, 편직기(Jacquard loom), 가스조명, 염소표백 등이 속한다(Mokyr 1993, pp. 18-22).

지 특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만 지적하자면 비1차산업 생산성과 1차산업 생산성의 차이가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 기간에 급속히 줄어들어 소멸하지만 유럽 평균적으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산업간 자원의 이동성이 영국에서 한결 높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우선 농업생산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더러 농업노동력 비중이 17세기 말에 이미 50~55%에 불과했고, 1811년에는 약 35%, 1841년에는 약 20%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영국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꼭 영국의 우월성 내지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요즈음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론자들은 공장제 대량생산이 아닌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공업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abel and Zeitlin 1985; O'Brien and Keyder 1978; Roehl 1976). 이러한 가설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원용될 수 있는지 또한 독과점대기업이 자원배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는 어떨지 차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왜 영국인가에 대한 설명중에 시장의 크기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다. 농업소득 증대, 인구증가, 해외시장 특히 식민지시장의 수요 등에 힘입어 공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설이다. 하나씩 검토해보겠거니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요측면은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우선 인구증가가 식량수요보다 공산품수요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농산물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면 오히려 탈공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농업소득의 증대의 경우라면 공산품수요가 비교적 더 빨리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대는 외생적인 수요팽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요견인성장이란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는 외생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장에 따른 소득효과로서의 수요는 공급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Mokyr 1977). 수요증대에 의한 생산 및 소득의 증가는 케인지만 실업이 존재할 경우에 국한된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그러한 유희자원이 실재했는가 의문이고 둘째, 당시 수요증대의 대종은 미국독립전쟁과 나폴레옹전쟁에 의한 정부지출이었으므로 전쟁이 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수요구성의 변화가 공업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focusing device"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수요패턴이 모직이나 린네르에서 기계화에 적합한 면직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유행을 타는 소비품조의 팽창, 또는 '소비자혁명'이 공업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인데 이것 역시 소비품조의 외생성이 의심되는 만큼 산업혁명은 어디까지나 생산과 분배 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통설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Fine and Leopold 1990).

광범한 해외시장이 영국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는 가설에 오면 제국주의론과의 관련 때문에 논의가 한층 복잡해진다. 순전히 수출시장의 성장이 공업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설부터 살펴본다면 수출이 국민소득의 15% 정도나 되고 급속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두 차례에 걸친 전쟁 때문에 수출수요의 증가는 1760년 이전과 1780~1800년경에 제한되었다. 여기서 공산품 중 수출 비중, 특히 면직물이 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탕이나 차 등의 수입과 제조업제품 수출로 대표되는 선진국형 무역패턴

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대종은 유럽과, 또 미국독립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은 미미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Engerman 1994). 여기서 '수출주도형성장' 같은 요즈음 개발도상국의 논리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수출시장이 없었어도 자원을 내수산업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개방경제의 장점이라면 농업생산이 부족하더라도 식량수입에 의해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는 정도였을 뿐이다(Mokyr 1993, p. 74). 제국주의의 이 점에 관한 논의에서는 인도와의 교역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도 안 되었고 공업화 당시에 가장 큰 식민지인 미국을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경제적 이득보다 컸다는 등의 계산은 아직 공허한 수준에 머무는 듯 보인다(e.g. Davis and Huttenback 1986).⁵⁾ 한마디로 해외시장의 존재가 산업혁명을 주도했다는 가설은 뒷받침하기 어렵다. 만일 영국산업혁명이 지주상업자본과 궤를 같이했다는 주장이 맞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Daunton 1989; Porter 1990).

4. 자본조달

산업혁명기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들의 초기자본, 또는 기존기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외부자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친지의 도움이나 이윤재투자 등으

5) 주요 반론으로는 Hobson(1993), Offer(1993) 등이 있다.

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통설이었다(e.g. Pollard 1964). 기껏해야 지방은행(country bank)에서 단기상업 금융을 얻어 유동성을 충족시키고 유보이윤으로 고정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23년의 남해포발사건(South Sea Bubble) 이후 주식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본시장발달을 저해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John Law 체제 붕괴 이후의 프랑스 자본시장의 정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금융제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영국의 '금융혁명, 1688~1750?' (Neal 1990)이 외부자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산업혁명기 기업들의 성장과 과연 무관한 것이었을까. 자본시장이 더욱 취약했다라면 공업화가 지연이 되었을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이었더라면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을지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검증하기가 곤란한 가상적 가설이지만 산업혁명과 "금융혁명"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을 부정하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리차드슨(Richardson 1989)은 유동자본보다 고정자본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는 전통설에서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정통"을 소개한 다음 이를 통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경제수준의 고정자본 비중의 상승은 개별기업마다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본비율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설립 초기와 확장투자시 특히 고정자본비율이 높고 이후 서서히 낮아짐을 밝혀내었다. 산업이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또는 설비확장 때문에 고정자본비율이 완만히 상승하거나 안정적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부자본 필요성이 거의

[표 5] 영국의 투자율 (%)

년도	1761/70	71	81	91	1801	11	21	31	41	51/60
투자율	6.8	8.1	8.0	8.5	8.4	10.1	10.7	9.7	10.8	9.7

자료: 본문 및 Crafts(1985a), Feinstein(1988a).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고전적인 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방법론적 약점, 자료부족, 자료 해석의 문제 등으로 연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바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 방향의 접근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당시 영국의 투자율이 후발공업국이나 요즈음 개발도상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페인스틴(Feinstein 1988a)의 자본형성액을 크라프츠(Crafts 1985a)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투자율은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투자율이 낮은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본형성의 미약함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초기 공장들의 진입소요자본이 얼마 안 된다는 투자수요부족설과(Crafts 1987) 나폴레옹전쟁 수행에 필요한 공채발행이 야기하였던 자본시장에서의 구축효과(crowding-out) 논의(Williamson 1984, 1987)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은 "두 뒤뚱거리는 갯난쟁이가 서로 비누방울을 불어대며 싸우는 것과 같아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Mokyr 1987, p. 308). 구축효과 존재의 한 가지 검증방법은 이자율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임과 미로스키(Heim and Mirowski 1987)는 전쟁기간중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낮았음을 근거로 구축효과가설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낮다는 자료를 들어 당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지역별로도 통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영국이 18세기중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본수입을 기록했다는 추론이 브레지스(Brezis 1995)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임라(Imlah 1958)의 방법을 원용하여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추계에서 자본이동량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 투자액의 1/3에 달하는 액수였다. 특히 네덜란드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외자유입이 투자로 연결되는 매개항을 상인은행(merchant banking)에 의한 운전자본조달로 '추측'하고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와 Feinstein(1988a)의 추계를 간과한 점 등의 문제가 있을 듯하지만 상인은행의 역할에 주목한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산업혁명의 자본조달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본다.

5. 노동공급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업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해석이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제고, 해외이민의 유입,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가사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의 이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당시 노동시장은 지리적·계층적·직종별로 분할되어 있었고 이동성도 공급탄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가설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e.g. Pollard 1978).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차례로 검토하여 보자.

영국인구사의 경우 케임브리지 그룹이 20여 년간에 걸쳐 404개 교구의 기록을 수집·분석함으로써 거의 새로운 인구추계(1541~1871) 및 이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Wrigley and Schofield 1981; Wrigley 1983). 그 결과 1540~1640년 기간에는 이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인구성장이 더 빨랐고, 1656~1686년 기간에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또 18세기중에는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즉 18세기 동안 계속하여 19세기 초까지 1815년을 정점으로 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새로운 인구동태를 밝혀내었다. 또한 결혼출산율보다 초혼연령의 저하와 미혼율의 감소가 출산율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성분분석(component study)을 통해 확인되었다.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프랑스의 경우 공업화 기간중에도 인구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공업화보다 선행하였는데 영국은 공업화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서 기인하였는가 혹은 인구증가가 공업화를 촉진하였는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e.g. Habakkuk 1963). 이러한 논의는 곧 인구증가의 원인이 출생률의 증가인가 사망률의 감소인가 하는 방향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게 하였는데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인구증가는 출생률 급증에 보다 크게 기인했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것이다.⁶⁾ 물론 19세기 후반의 인구증가는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Goldstone

6) 당시 출생률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e.g. Lindert 1983).

1986). 원래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의 논란은 인구증가의 외생성 여부를 따져서 공업화와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당시 사망률감소에 기여한 것은 결핵, 콜레라 등 영양결핍질병의 쇠퇴였으므로, 즉 출산뿐 아니라 사망도 경제적으로, 즉 영양상태의 호전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McKeown 1976; Fogel 1986), 출생률인가 사망률인가로의 질문 전환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결국 당시 인구와 경제의 움직임은 상호작용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⁷⁾ 그러나 인구증가가 외생적이지 아니더라도 공업화 기간 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격도 바뀌어 갔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동시장의 분할과 이동성 결여는 이 절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임금격차가 크더라도 장거리이주는 전통적 관습에 의해, 또는 구빈법이나 이주금지법의 유산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꺼려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운 것이 특히 1830년대 이후에 유입된 대규모 아일랜드 이주민이었다(Pollard 1978).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미숙련노동자들이었고 공장보다는 농촌지역에 정착하였다. 광산이나 토건업에 취업한 아일랜드 이주민들도 있었지만 1841년까지도 그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어 영국의 총노동자수와 비교할 때 최대한으로 잡아도 9% 정도이므로, 물론 이만해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Williamson 1986). 다만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

7) 영양결핍질병이라 볼 수 없는 천연두, 페스트, 장티푸스 등이 창궐하던 시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시킴으로써 값싼 노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면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의 노동력이 동은 소위 '농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농업혁명의 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클로버와 순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윤작체계를 확립하고 곡물 및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비료 및 농기계를 도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량했다는 등이다(Mingay ed. 1977).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증대하여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할 만큼 식량공급이 증가하였고 농업 부문에서 잉여노동력을 배출하여 산업노동자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영농규모의 확대에 따른 TFP의 상승에서 온 것인지 질소화합작물 형태로서의 자본형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견 양자가 상호배타적인 가설인지 분명치 않다(Clark 1991; Allen 1991).

농업혁명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즉 농산물자급도 추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인클로저 및 신농법 도입의 선도지역인 잉글랜드의 경우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로부터의 식량수입이 계속 상당한 비중(추계에 따라 산업혁명 기간 식량소요량의 50% 가까이)을 유지했다는 것이며 오히려 영국농업의 황금기는 19세기 후반으로 늦추어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76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육류를, 나

8) 이에 더하여 농업소득의 증대가 공산품수요를 확대시키고 농기구구조를 위해 철강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자본, 경영방법, 기술 등을 공업 부문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까지 있다(Bairoch 1969).

[표 6] 브리튼: 농산물가액에 대비한 음식물수입 (연평균 경상가격)

	농림수산업 소득 (£1000)	음식물 수입 (£1000)	수입액 비중 (%)	재수출을 제외한 순수입액 비중(%)
1814~16	91,700	31,127	34.0	23.2
1824~26	77,500	25,758	33.2	27.3
1834~36	89,700	28,465	31.7	27.2
1844~46	103,200	34,657	33.7	29.9
1854~56	112,700	52,769	46.7	41.7

자료: Thomas(1982), p. 148.

중에는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1795~1815년 전쟁중에는 곡가가 급상승하고 수입이 더욱 급증하였고 특히 남부 잉글랜드쪽에 타격이 심했다. 1815~1846년간에는 곡물수입제한법(Corn Law)이 발효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중 브리튼섬 음식물 생산의 1/3 가량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잉글랜드만 따지면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입농산물 때문에 남부잉글랜드 농업이 극히 피폐하였음은 당연하다(Thomas 1982).

곡물법폐지에 의해 영농구성이 목축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오히려 가축의 분뇨라는 풍부한 비료 덕택에 곡물수확량도 늘고 새로운 농업경영방법이 확산되어 1847~70년간의 소위 '황금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Hueckel 1981). 또한 농업혁명이가 인클로저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추계된 인클로저 진행의 시계열과 일치하지도 않는다.⁹⁾ 여타국과의 농업생산성의

비교에 있어서도 당시 관찰자들의 기록과는 반대로 18세기 영국의 농업생산성은 프랑스나 아일랜드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Allen and O'Grada 1988; Schmitt 1990).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기는 하였어도 급증하는 인구의 식량수요를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충당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터인데 위와 같이 영국의 농업생산성의 우월성이 자료로서 입증이란 된다는 현상은 '불가사의'(food puzzle)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다. 농산물이 아닌 식품수요의 증가, 식품수요 소득탄력성의 급감, 도시화와 공업화가 식품수요를 억제하였다는 등등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Clark, Huberman and Lindert 1995). 영국의 농업생산성 추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Tranter 1990).

인구증가와 농업혁명은 다같이 노동공급과 연관이 있게 되어 산업혁명기 노동공급의 원천이 인클로저인가 인구증가인가를 따지는 것이 고전적인 논쟁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당시 노동력의 지역별(특히 장거리) 및 부문별 이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인구가 공급과잉인 남부농업지대에서 북부공업지대로 노동력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격차도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9) Leicestershire의 사례를 보면 1550년까지 총경작지의 45.0%, 1599년까지 2.0%, 1699년까지 24.0%, 1799년까지 13.0%, 1914년까지 11.6%, 그 이후 4.6%가 인클로저되었다(Wordie 1983).

인구증가도, 농업 부문에서의 노동력배출도 산업노동자 공급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클로저의 경우 공동지의 사유화와 관습소작권의 박탈 등으로 농민들을 농토에서 축출하였다는 면이(물론 임노동자의 창출,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등의 의미가 더 큰 측면이겠지만) 주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노팅엄셔(Nottinghamshire)의 사례연구를 통해 인클로저 지역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챔버스(Chambers 1953)의 연구는 인클로저로 신농법 도입이 가능하여 휴한지가 없어지므로 노동력이 더 필요했다는 점, 인클로저사업 자체가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점 등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이 의회인클로저는 산업노동자 형성과 무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시기도 확장했을 경우 인클로저가 이주를 초래했다는 회귀분석이 나오고 있다(Crafts 1978). 다만 이 시기의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절대적 증감보다 상대적 감소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업노동자의 비중이 1688년에 56%, 1759년 48%, 1801년 36%, 1841년 21%로 하락한 것을 인클로저를 통해서든 아니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잉여노동력이 도시산업 부문으로 배출되었을 것인가. 인구증가와 농산물수요의 소득탄력성에서 수요량을 계산하고 적절한 생산합수를 가정하면 농산물수급의 상태에 따라 공업화 또는 탈공업화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크라프트스(Crafts 1980)는 소득탄력성을 0.73, 생산합수에서 농업노동의 가중치를 0.4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1700~1760년 기간에는 농업과잉노동이 배출되었으나

1760~1800년 기간에는 무리한 공업화로 농업노동을 흡인, 농업 부문에 압력을 가하여 식량부족과 농산물가격상승을 초래하였으며 1820~1840년은 대규모 식량수입에 의하여서만 농업노동력의 배출이 가능했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노동자의 공급은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다. 노동의 본질적 변화, 즉 작업장노동, 선대제노동에서 시간관념과 규율이 강제되는 근대적 공장노동으로의 변화를 고찰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과정은 절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른 각도로 고찰하기로 하자.

6. 공장제와 가정경제의 변모

이 글의 1절에서 '산업조직설'이라 명명한 견해를 따른다면 기계나 새로운 기술만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 생산양식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생산수단과 함께 생산조직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이용하여 원료 및 도구를 대여하고 일정기간 후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던 선대제공업으로서는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한 곳에 모아 과업별 감독을 시행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공장생산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공장제의 본질은 기계화 자체라기보다 규율이요, 노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조직인 것이다(e.g. Marglin 1974, 1975; Berg 1985). 선대제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통제의 취약성에 있었으며 18세기 후반 농촌의 가내수공업자들이 일터를 공장으로 옮기는

데에 극력 저항하였음을 보더라도 산업조직설의 주창자들의 견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조직의 혁명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산업혁명기의 가장 천재적인 경영자들에게도 근로자로 하여금 시간을 엄수하고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케 하는 데에는 수십 년에 걸친 회유와 강제를 필요로 하였다(Pollard 1963). 이는 산업혁명 전까지 인류가 자연과 조화된 불규칙한 생활의 리듬에 오래 익숙해 있었던 데 기인한다. 농업, 목축, 어로 등 계절에 따라 일의 강도가 바뀌는 생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업에서도 일의 불규칙한 리듬은 장기간 잔존하였다. 선대제하의 가내수공업자들이 누렸던 소위 성월요일(St. Monday)의 관습이 19세기 후반까지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대개 제품 회수와 다음 주에 필요한 원료의 보급이 토요일 저녁에 행해졌으므로 가내수공업자들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미친듯이 일하고 주말에는 지나친 음주 및 향락으로 탈진하여 월요일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쉬었다. 기계화된 공장에서는 과업 위주의 노동보다 동일한 시간에 상호조정된 규칙적인 노동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러한 불규칙한 리듬을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가 계급 특히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시간관념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감리교와 복음주의 등 종교적 계몽, 교화와 공장에서의 각종 금전적·신체적 강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 계급은 기계파괴운동, 태업 등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세대가 교체되면서 노동운동도 규칙적인 노동리듬의 한계 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운동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토요일 오전 근무, 하루 10시간 노동 등이 주창되면서 성월요일은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Thompson 1967; Reid 1976). 이와 같이 아마도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본능인 인류로부터 정확하고 능률적인 산업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는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이 공장취업을 군대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여겼다는 기록도 허다하다(Mantoux 1928, p. 409). 그러나 공장제의 궁극적 성패는 기술진보가 동반하였느냐에 달려 있고(Mokyr 1993, p. 111),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취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규율에 동참하였다(Clark 1994)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공장제 성립에 관한 또 하나의 설명은 거래비용절감설인데 이는 코우즈(Coase 1937)의 관점을 이어받은 듯이 보인다(Williamson 1991). 미국에 비해 영국 노동자들이 공장규율에 늦게 적응한 것은 영국농업노동의 계절성이 더 심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Sokoloff and Dollar 1991).

공장생산에 적합한 산업노동자군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성, 아동, 부랑자, 해외이민 등 한계적 노동에 크게 의존함이 불가피하였다. 여성 및 아동노동의 동원은 이를 가능케 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과 교육, 가족제도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기술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체력과 수력방적기 시대의 방적기술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었으며¹⁰⁾ 또한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몇몇 공정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작은 체구와 섬세한 손놀림이 오히려 기계의 조작에 이로

10) 1833년의 자료에 의하면 상당기간의 직업훈련(OJT)이 필요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연구가 있다(Boot 1995).

은 면도 있었다. “기계가 근육의 힘을 대체함에 따라 체력이 약하고 신체발달은 미숙하지만 지체가 월등히 유연한 근로자의 고용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기계를 사용하는 자본가들은 여성과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최우선적으로 구하였다”(Marx 1977, p. 517). 그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연소노동의 이점은 더욱 중요한 곳에 있었다. 약한 체력의 근로 어린이들은 유순하였고, 성년노동자보다 수동적인 복종의 상대로 통제하기 용이하였으며 임금부담도 크미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미성년노동자들은 구빈법에 의해 각 교구가 보호하고 있던 구호대상자(pauper)였다. 산업혁명 초기단계에는 기계의 원동력으로 주로 수력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장은 대개 수력은 풍부하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산재하게 되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였다. 한편 인근 교구의 구빈원들은 그들이 숙식시키고 있던 부랑아들을 제거하려는 요구가 상존하였다. 이들 양자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마치 상품 다루듯이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구빈원의 원아들은 50, 80 또는 100명씩 떼지어 짐승처럼 공장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들은 공장에서 몇 해씩이고 감금된 생활을 하였다”(Mantoux 1961, p. 411). 최근 추계에 의하면 초기 공장노동자의 최소한 3분의 1이 이들 구빈원 도제들이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80~90%에 달하였다고 한다(Rule 1981; Collier 1964).

19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구빈원 도제의 공장 고용이 줄어들었다. 면직물 공장의 동력으로 증기기관이 이용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공장들은 탄광 부근에 밀집하게 되었는데 이들 석탄산지는 기존의 도시이거나 급속히 성장하는 마을이었

다. 공장의 입지가 이와 같이 비교적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었으므로 노동력의 공급을 다른 지방에 의존할 필요가 적었다. 즉, “맨체스터 같은 도시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거의 없었으며 클라스고우 근교의 한 기업가는 도시 노동자를 교외로 동원하여 번성하였다”고 한다(Pollard 1965, p. 173). 또한 농촌의 수력공장의 경우에도 기계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남에 따라 연소노동보다 성년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Redford 1964).

숙식제공의 대가로 수년간 근로어린이를 공장에 계박하는 구빈원 도제제도가 사라지고 이에 대신하여 계약체결에 의한 자유 미성년 노동고용이 일반화되고 관습화된 것이다. 공장주와 아동노동자의 부모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주로 주급제에 의한 1년 또는 수년간에 걸치는 고용을 내용으로 하였다. 즉, 물 방적기의 등장과 함께 성년남자의 노동력이 점차 필요하게 되자 공장주들은 임노동의 고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공장의 가족관계가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부모와 어린이를 함께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금전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 교육 및 감독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장노동의 불쾌한 측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Landes 1969).

1830년대에 오면 기술이 더욱 진보하여 신형 물과 자동방적기가 도입되고 아동노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실시되어 공장노동자 중 연소자의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때에는 공장의 규율과 정확성에 단련이 된 새로운 세대가 이미 성년층에 도달했던 것이다(Landes 1969).

말할 것도 없이 연소노동의 경우에도 규율은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았다. 고용자들은 수시로 체형, 벌금, 또는 해고의 위협 등 가혹한 방도를 택해야 했다. 초기의 '자유' 연소노동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극소수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였으므로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량 고용이 시작되자 어린이들은 기술을 습득한다는 유인이 없어지고 공장노동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가족,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은 공장주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2차적 고용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들을 혹사시켰다. 더욱이 직물업 중에서도 연소자들은 생사를 끄는 일이나 면사를 잦는 일 등 일정한 공정에 집중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규율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이 들었다(Pollard 1965).

[표 7]은 산업혁명 말기에도 아동노동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된 아동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곳에 따라서는 부랑아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Cunningham 1990) 취업아동들은 공장도시에 밀집하여 가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공장규율과 정확성에 단련된 새로운 근대적 산업노동자세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Nardinelli 1990).

[표 7]에서 나타난 최소고용연령은 최근 미시자료(household budget data)를 이용한 호렐과 험프리스(Horrell and Humphries 1995b)의 연구결과를 밑돌고 있다. 세심한 분석을 통한 그들은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공업화 초기에 아동노동과 아동의 공장노동이 증가하였으며 최소고용연령이 낮아졌다.

[표 7] 영국 각 산업에서의 아동고용상황(1833~34)

산 업	최소 고용연령 (세)	연소자의 연령분포 (세)	일일평균 노동시간 (시간)	총노동자수에 대한 16세 미만 아동의 비율(%)
면 직	8	8~18	13	35
레이스	4	4~14	12~13	40
모 직	6	6~18	12~13	40
견 직	6	6~18	12~14	46
아 마	6	7~14	12~13	40
탄 광	4	4~12	8~18	22
금속광산·지하 ·노변	7 5	7~12 5~12	8 10~12	— —
굴뚝 소제	4	4~8	12	—

자료: Crane(1984)에서 계산.

노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은 가계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소자들이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동생들로 하여금 가계소득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공업화가 아동노동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아동노동이 감소추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여아와 남아에 따라 노동시장변화의 효과가 달랐던 까닭으로 이후 노동의 성별분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으나 미시적 자료의 뒷받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자극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계연보자료는 다방면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산업혁명과 가족관계의 변모와의 관계는 최근 여성사학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각도로 재조명되고 있다. 엘리스 클라크(Clark 1919), 아이비 핀치백(Pinchbeck 1930) 등 고전을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시장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두드러진 핵가족의 대두를 살펴보자. 이전에는 가족구성원이 여가생활을 함께하지 않고 남성은 선술집, 여성은 뜨개질이나 잡담 등 성별로 구분된 집단행위로 저녁시간을 보내었으며 출산(세례), 결혼, 장례 등 집안행사도 온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전통적 패턴이었다. 가정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이웃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샤리바리(charivari) 등이 이러한 전통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 중산층으로부터 이러한 관습이 사라지고 공동체보다는 친족에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이다.¹¹⁾ 이것은 또 여성의 임노동자화에도 관련이 있다. 먼공장의 경우 성인이나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직물업의 경우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 기계화되지 않은 전통 부문에의 취업이 훨씬 많았다. 1851년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 노동인구의 40%가 가내하녀나 가정부였다. 이는 도시의 성격에 따라 고용

11) 이는 지방주의 “도덕경제”(Thompson 1971의 용어를 원용한다면)가 쇠퇴하고 시장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였으며 가족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성의 모성본능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의 약화 및 촌락원로나 사제의 도덕적 권위 하락 등도 이러한 가족중심주의(domesticity) 강화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었다(Shorter 1975, chap. 6-7).

형태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레스턴(Preston)이나 스톡포트(Stockport) 등 직물공업도시에서는 14세 소녀의 76%가 공장노동자였고 30세 미만 공장노동자의 40%가 여성이었으나 요크(York) 같은 상업도시에는 여성노동의 60%가 가내하녀였으며 30% 정도는 수공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하였고 린네르 등 근대적 부문에는 1% 정도가 고용되는 데 머물렀다. 광업도시 등에서는 여성의 광산노동참여율이 매우 낮았고 반 이상의 여성은 소상공업이나 의류제조 등에 고용되었다. 공장여성노동 중 연소자나 미혼녀, 독신녀의 비중이 컸던 것은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Tilly and Scott 1978, 4장, 특히 p. 87 [표 4-5]). 그러나 [표 8]에서 보듯이 기혼녀의 노동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서 공업화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는 가설도 기각할 수가 없다(Horrell and Humphries 1995a).

가장 큰 변화라면 남성과 여성의 일터가 분리되었다는 것과 임금노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톨리와 스콧(Tilly and Scott 1978)의 개념을 쓴다면 “가계생산양식”에서 “가족임금경제”로 이행한 것이다. 농경이나 선대제가내공업 시기에는 가족의 일터가 가정 내에 국한되었는데 도시화와 공장제생산의 확대로 가족구성원의 일하는 장소가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일터의 분리는 핵가족의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소원하게 한 경향도 있었고 이에 따라 가부장의 권위가 하락하는 면이 있기도 하였다.

반면 산업혁명과 자본제의 도래가 가부장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여성학적 입장도 만만치 않다.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노동시장의 성적 차별을 공고히 하였으며 가정으로부터 일을 분리

[표 8]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 추이 (%)

	고임금 농업	저임금 농업	광업	공장	outwork (옥외노동)	상업	임시직	계
1787~ 1815	54.8 (42)	84.9 (99)	40.0 (5)	36.8 (19)	45.5 (22)	62.5 (8)	100.0 (1)	65.7 (196)
1816~ 20	34.2 (38)	—	27.8 (54)	4.2 (24)	41.9 (198)	30.0 (30)	66.7 (3)	49.4 (347)
1821~ 40	22.2 (45)	84.6 (136)	33.3 (6)	85.7 (28)	54.3 (94)	62.5 (8)	66.7 (12)	61.7 (329)
1841~ 45	40.0 (5)	55.6 (9)	9.4 (32)	100.0 (2)	72.7 (44)	100.0 (1)	0.0 (1)	57.5 (94)
1846~ 65	47.8 (46)	63.0 (81)	0.0 (1)	100.0 (5)	69.1 (55)	42.9 (7)	—	45.3 (195)

주: 가계연보자료에서 추계한 것이므로 관측치의 수가 서로 달라 소그룹끼리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괄호 안은 관측치의 수.

자료: Horrell and Humphries(1995a), p. 98에서 계산.

시켜 남녀의존관계를 변모시켰다는 것이다(Hartman 1976). 노동과정에서의 숙련도를 근육의 힘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성별로 구분하여 임금격차를 정당화하였다는 주장도 있다(Rose

12) 특히 물방짜기의 작동을 남성이 독점한 것은 기술적으로 하등 이유가 없으며 10시간 노동운동 등도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Valverde 1988). 또한 18세기에 농업에 있어서도 성별분업이 확산되었다는 논의가 Sharpe(1995, 특히 p.357)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다방면의 세심한 사례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986).¹²⁾

당시 기술진보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기계나 생산과정의 혁신이 값싸고 유순한 여성 및 아동노동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Marglin, 1974). 전통적인 숙련공들의 관습이나 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노동공급의 원천이 신기술에 융합될 수 있다는 이점(기술적 및 이윤동기를 포함하여)을 발명가나 제조업자들이 포착하였다는 것이다. 국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구빈당국자들의 이해와 위와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기술진보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가설까지 등장하고 있다(Berg 1993). 이 역시 수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하는 수밖에 없다.

가정경제의 변모논의는 자연스럽게 프로토공업화론(proto-industrialization)과 연결이 된다. 멘델스(Mendels 1972)에 의해 주창되어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에 의해 확산된 이 견해는 선대제가 16세기 이후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전된 형태인 농촌수공업이 공업화의 첫단계(proto-industry)이며, 그 두번째 단계인 산업혁명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다고 한다. 농민들이 유희노동력을 이용, 상인자본의 지배하에 원격지시장을 상대로 제조업제품을 생산하는 이 형태는 자본이 노동조건에 신속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결과로 농촌 부문의 봉건질서가 해체되고 농업지역별로 생산이 특화되었으며,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가족내 분업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Kriedte, Medick and Schlumbohm 1981, 1993). 이 학설은 많은 이론적·실증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

선 빈곤한 지역인 목초지나 산간지역에 값싼 유희노동력이 많아 농촌수공업이 번성했다는 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토평업' 지역이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고 부유한 농촌인 경우가 많았다. 농촌수공업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가족규모도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수공업의 도래 이전과 그 이후의 결혼관습이나 출산행위에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족공동체적 멘탈리티는 농촌수공업이 확산되기 오래 전에 쇠퇴하였고 개인주의는 훨씬 일찍 도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인 사실이 부인되는 것 외에 프로토평업이 산업혁명을 불러 일으켰다는 추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따른다. 즉 농촌수공업이 자본축적에 의해 공장건설을 가능케 하였고, 인구를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촉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자본형성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노동공급도 프로토평업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았다는 것이다(Coleman 1983; Houston and Snell 1984; Clarkson 1985). 오히려 농촌수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에 배타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노동공급량에서도 문제이나 산업노동자계층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농촌수공업에서 공장제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러웠을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 공장밀집지역이 선대제수공업 번성지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평업화론은 인구, 가족관계, 사회구조, 농촌수공업, 공장제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들을 자극하였고 아직도 논리적 정합성과 실증적 근거를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Engerman 1992; Mager 1993; Rudolph 1992). 농촌수공업이나 노동공급, 또 가족관계의 변모는 구빈제도(poor

relief)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방면의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나(Landau 1991; Snell 1991, 1992; Brundage, Eastwood and Mandler 1990)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만을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자.

영국 구빈제도의 특성은 교구마다 거의 동질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조달되었고 구휼심사가 상대적으로 정규적이었고 비교적 인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빈제도가 교구민들에게 일종의 보험형태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률은 낮았고 노후보장 등을 위한 필요가 없었으므로 출생률을 저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으며 해고의 위험이 따르는 임노동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인클로저와 경영규모확대를 촉진시켰다. 자연히 생산성도 증가하고 적어도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농촌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하기 전까지는 영국경제발전에 일조하였다는 것이다(Solar 1995).

7. 생활수준논쟁

산업혁명기 하층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가 하락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개입되어 참여의 관심사일 뿐 더러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낙관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비관론'은 주로 사회주의 또는 좌익편향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하층민'을 노동자, 공장노동자, 실업자, 극빈층 어느 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 생활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준 기근, 전쟁, 도시화 등의 효과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난점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는 실질임금이였다. 실업자추계, 직업구성변화, 가계소비행태의 변화, 경기변동, 적절한 표본추출의 문제, 디플레이터의 선정, 자료의 제약 등으로 난항을 거듭한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약 20년 전까지는 1820년경까지 실질임금의 하락 내지 정체, 1850년까지 임금상승 정도도 미약(Taylor 1975; Deane 1969)으로 요약되었으나 그 이후의 실질임금추계는 훨씬 낙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즉 1760~1820년 기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으나 1850년경까지는 가속적으로 상승하여 1819~51년간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은 80%(연율 1.9%), 모든 노동자의 임금은 116%나 올랐다는 것이다(Lindert and Williamson 1983b). 그러나 이들의 디플레이터 선정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가적인 자료가 이용되어 1750~1813년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고 1813~1913년간은 연율 1.2%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수정추계가 제시되었다(Crafts 1985b; Crafts and Mills 1994). 런던의 자료를 이용한 스위츠(Schwarz 1985)의 연구결과는 1750~1800년간 실질임금이 40%나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 다시 50년이 걸렸다는 강력한 비판론을 제기하였는데 지리적인 임금분포를 감안한 비판에 봉착하였다. 즉 런던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북부공업지대의 임금이(농업임금까지도) 높았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스 스태퍼드셔(North Staffordshire)의 일반노동자, 목수, 벽돌공, 도자기공들 임금자료로 뒷받침되었다(Hunt and Botham 1987; Hunt 198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부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여성 및 아동의 임금을

[표 9] 남성의 실질임금과 가족소득 상승속도 (연율 %)

	Horrell & Humphries				Lindert & Williamson 생산직	Crafts
	남성임금		가족소득			
디플레이터	L&W	Crafts	L&W	Crafts		
1791/95~1846/50	1.23	1.12	0.99	0.88	1.02	0.80
1791/95~1816/20	-0.41	-0.36	0.02	0.06	0.32	0.71
1816/20~1846/50	2.61	2.37	1.81	1.57	1.87	0.94

자료: Horrell and Humphries(1992), p.871에서 계산; Lindert and Williamson(1983b); Crafts(1985a).

고려해야만 '가족'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소득의 상승속도는 낙관론적인 실질임금추계보다 상당히 낮아서 임금이나 소득자료의 평가에 더욱 조심성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Horrell and Humphries 1992).

임금지표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직접 소비수준을 관찰하는 것도 생활수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단편적인 기술사료에 의하면 식생활의 경우 일인당 소비가 증가한 품목은 감자, 차, 설탕, 진과 위스키 등이며 밀빵, 육류, 맥주 등의 섭취는 감소하였다. 면직의류나 비누, 양초 등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주거의 경우 주택 자체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상하수도의 불비, 밀집지역 공중위생의 열악함과 전염병에의 노출 등 때문에 주생활 자체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e.g. Thompson 1963, chap. 10). 소비수준을 더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수준을 추정할 시도도 있다. 설탕, 차, 담배 등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일인당 소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상대가격효과, 소비구성의 변화, 소득 탄력성의 문제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소비함수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 가격을 요소로 하는 소비함수를 $Q = f(Y, P)$ 라 하고 자료가 가용한 1855~1900 기간에서 파라메타를 추정하면 Q 와 P 의 자료를 이용하여 1791~1850년간 Y 의 예측치 \hat{Y} 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결과 \hat{Y} 가 1840년대 말까지 거의 불변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 생활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Mokyr 1988). 물론 소비함수가 해당기간 동안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소득이나 소비 이외에 산업혁명 기간 동안의 생활이 어떤 인 구학적 결과를 낳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생활수준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노동자위생조건조사위원회'(1842) 위원장이었던 채드윅(Chadwick)의 추계에 따르면 18세기 말 이후 계속 유아사망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노동자의 경우 위생조건이 극악했던 이유로 평균수명이 20세를 못미쳤다 ([표 10] 참조). 티프스, 콜레라, 결핵, 천연두 등의 만연으로 1840년경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노동자계층의 자녀들은 60% 정도가 5세 이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Chadwick 1843, chap. 4). 최근 인구사의 발달로 영국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 평균수명이 약 35세에서 약 40세로 늘어났고 출생률도 급히 상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지역별·계층별 추계에서는 채드윅의 자료

[표 10] 평균사망연령(1842)

	첸트리	상 인	노동자
트루로	40	33	28
더 비	49	38	21
맨체스터	38	20	17
러트란드서	52	41	38
볼튼유니온	34	23	18
베트날그린	45	26	16
리 즈	44	27	19
리버풀	35	22	15

자료: Chadwick(1843), chap. 4.

를 대신할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생활수준논쟁에 새로 자리를 잡은 생물학적 자료는 신체적 척도, 특히 연령별 평균신장이다. 인체성장학(auxology)의 진보에 따라 영양상태와 연령별 신장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밝혀지자 하층민 또는 공장근로자의 복지의 지표로서 역사적 신장기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년이 되기까지의 신체발달은 노동의 강도에 따른 소모분을 제외한 순영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육기의 순영양의 부족은 일차적으로는 키가 크는 시기를 지연시키며 심하면 성년이 되어도 단신으로 머물게 한다. 따라서 연령별 신장의 절대적·상대적 관찰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Fogel et al. 1983; Fogel 1994; Tanner 1978). 생활수준논쟁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는 플릿, 왓터와 그레고리(Floud, Wachter and Gregory 1990, chap. 4)로서 이들은 신장지표로 판단한 순영양상태는 1760~1820년간 향상되었으며

그 이후 약 반세기 가량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820년 이후 실질임금이 향상되었다면 이는 신체적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금자료가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시사하는 기간에 신장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임금자료는 하층노동자에 국한하여 추계하였고 신장은 더 포괄적인 대상에서 측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소득수준은 높아지되 도시생활의 비위생과 불건전 때문에 신체발달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코몰로스(Komlos 1993)의 비판대로 신장측정기법(anthropometrics)에 아직 개선 가능성이 많은지도 모른다. 1820년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호주로 유형된 범죄자들의 신장은 1770~1815년간 계속 하락하였으며(Nicholas and Steckel 1991) 런던경시청과 지방경찰기록에 나타난 범죄자들도 1812~57년 기간 동안 신장하락을 보이고 있다(Johnson and Nicholas 1995). 여성과 아동의 신장기록도 산업혁명 기간중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95~1820년간 잉글랜드 여성들의 신장하락은 남성이나 아일랜드 여성에 비해서도 속도가 빨랐으며(Nicholas and Oxley 1993) 18세기 말까지 출생한 런던머린 소사이어티 소년들의 평균키는 지극히 작아서 고금을 막론하고 뉴기니아의 루미족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Floud and Wachter 1982).¹³⁾

결국 산업혁명기의 생활수준논쟁의 결과는 실질임금수준, 소비수준, 건강상태 어느 척도로 보더라도 낙관론쪽으로 쉽게 결

13) 14세 기준 135.5cm. 참고로 한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14세)의 평균 신장은 1960년에 149.6cm, 1995년에 163.3cm이다(교육부, 1995년도 초·중고생 체격현황, 1996).

론을 내리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논쟁의 또 하나의 차원은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생활수준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하락(또는 상승?)하였을 것인가. 또한 하층민의 상대적 희생을 줄이면서도 같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다분히 몰역사적인 접근이지만 전자에 관해서는 모키르(Mokyr 1993, p. 120)를, 후자의 경우에는 폰 툰젤만(von Tunzelman 1985)을 참조하도록 미루어 둔다.

하층민의 절대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변화가 생활수준논쟁의 일부로 자리잡아왔다. 쿠즈네츠(Kuznets 1955)의 고전적 가설대로 공업화 초기의 영국에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지니계수가 1760년에 0.49에서 1800년에 0.52, 1870년에 0.55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1759년에 45.1%에서 1801~1803년에 48.8%, 1867년에 53.7%로 늘어났던 것이다(Lindert and Williamson 1983b).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론, 맬써스의 절대적 과잉인구론, J.S. 밀의 숙련도 차이론 등이 검증되었으나(Williamson 1985, 1987) 결과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Feinstein 1988b 참조). 오히려 수직적 온정주의적 지방주의 유대사회에서 수평적 계급사회로 나아감에 따른 하층민의 소외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Thompson 1991, chap. 4-5, Perkin 1969).

8. 아동노동

1) 아동노동의 실상

생활수준논쟁의 보론으로서 특히 아동노동의 실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앞의 5절에서는 근대적 공장제도의 생성에서 연소노동이 수행했던 중대한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 구빈원 도제의 노예적 참상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직물공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자유' 연소노동자들의 상태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전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명목적으로나마 자유의사에 의해 판매하였다. 이제 와서는 그는 아내와 자식을 팔게 되었다. 그는 노예상인이 된 것이다" (Marx 1977, p. 519). 에드워드 톰슨(E.P. Thompson)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 대한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어떤 목사가 매장한 공장소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팔 한아름 양모를 안은 채 서서 자고 있다가 채찍질에 깨어났는데 이날 그는 17시간을 일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그를 안고 집에 갔으나 그는 저녁을 먹지 못하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깨어 공장의 불빛이 보이는지 묻고 일터에 늦을까 걱정이라고 한 후 숨졌다고 한다(Thompson 1963, p. 347).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공장근로어린이들에 관한 기록은 새들러(M. Sadler)의 「특별위원회보고서」(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the Bill to Regulate the Labour of Children in the Mills and Factories of the United Kingdom, 1832)로서, 이것은 공장연소자들의 참상과 질병, 재해 등 음울

한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기록의 증언들이 때때로 시대적으로 이전의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되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당대나 그 이후를 막론하고 전혀 그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다. 87명의 증언의 집적인 682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출판 직전에 의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청문회에서 패배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은 재개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보고서에서 몇 문단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5047. 성업기에는 그 소녀들이 아침 몇 시에 공장에 출근하였습니까?

성업기에는 약 6주 동안 새벽 3시에 출근하여 밤 10시 또는 거의 10시 반까지 일하였습니다.

5054. 이러한 과중한 노동 때문에 아침에 자녀들을 깨우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 시간에는 잠이 든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마루 위에 놓힌 채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5059. 그들은 몇 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저녁을 먹인 후 잠자리에 보내는 것이 거의 11시경이며 내 아내는 그들을 제 시간에 깨울 수 없을까 두려워 밤을 새우는 수가 많았습니다.

5075. 당신 아이들 중 채찍질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네, 모두입니다. 큰 딸의 경우 두 주일 전 내가 랭카셔에 갔다 돌아와 어깨의 매자국을 보고 "앤, 무슨 일이나"고 묻자 "감독님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러나 제발 감독님께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왜 맞았는지 이야기하면 감독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할게요, 아버지. 나는 떨어진 솜덩이를 치우고 있었는데 내 옆 여공이 워낙 숙련되어 있어 내가 치우는 동안 기계의 옆쪽을 쳐들어 줄 수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다가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옆사람이 기계의 위뚜껑을 열고 있는 동안 내가 치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감독은 당장 기계를 제자리로 돌리라고 했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우리의 어깨를 채찍으로 때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앤은 등이 흐물흐물해지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Parliamentary Papers 1831~32*, pp. 192-93)

새들러 보고서의 증언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영국 산업혁명 초기의 연소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고발문서로 남아 있다. 새들러와 또 “공장어린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공장법특별위원 오슬러(R. Oastler 1972) 등의 아동노동에 대한 비난은 그 후 해몬드 부처, 허친스, 해리슨 등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되풀이되었다(Hammond and Hammond 1932; Hutchins and Harrison 1903).

물론 아동노동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장제시대 이전에도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수공업경제의 일부이었다. 16세기에 이미 베니스의 한 귀족의 여행기에 대부분의 영국 부모들이 아이들이 7살, 늦어도 9살이 되면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18세기 초 다니엘 데포는 노포크의 어린이는 4살이나 5살에 자기 먹을 일을 하며, 요크셔에서는 “4살이 되어 손만 놀릴 줄 알면 자기 부양에 충분하다”고 기록하였다(Hunt 1981, p. 9; Defoe

1724~26 참조). 공장이 발달하기 오래 전의 가내공업에서도 연소노동은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물방적기의 발명자인 새뮤얼 크롬프턴의 큰 아들 조지는 그가 네 살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Ward ed. 1970, Vol. 2, p. 67).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면사 뽑는 일을 돕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鐵絲 체에 솜덩이를 놓고 방망이질을 한 뒤 비누거품이 가득 담긴 깊은 갈색 항아리에 담갔다. 그리고는 내 페티코트를 허리까지 걸어 올리고 항아리 속에 나를 집어넣어 바닥의 솜을 밟게 하는 것이다. 또 한 체 가득 솜덩이를 방망이질 한 후 나를 항아리에서 꺼내고 솜을 넣고는 다시 나를 집어넣어 밟게 하였다. 항아리가 솜으로 가득 차서 내가 안전하게 그 위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되어 결국 나는 옆에 있던 의자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연소노동의 가장 광범한 형태는 가내경제 또는 가족경제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뒤뚱거리며 걸음질할 정도의 아이는 자질구레한 물건을 집어오거나 날랐고, 조금 더 큰 아이는 솜덩이를 널거나 물레를 돌리거나 실패를 감았으며 더 장성하면 실을 잣게 되었다. 직물공업의 경우 연소노동이 지극히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일을 도와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종종 이를 부러워하였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 어린 딸들은 빵을 굽거나 술을 빚거나 청소나 밥 짓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헐벗은 채 날씨에 관계없이 들이나 농장에서 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노동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전의 일에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었으며 공장에서의 단조로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특별히 잔인한 것이었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어린이들의 일은 간헐적이거나 여러 과업을 순환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패를 감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온종일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항아리의 솜뿔기도 매일 8시간씩 지속되지는 않았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이 달라졌고, 또한 일의 중간중간에 심부름을 하거나 흑딸기를 따거나 나뭇가지를 줍거나 또는 뛰노는 시간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은 가족경제 내에서 부모의 보호하에 이루어졌다(Thompson 1963, p. 333-34). 이에 반하여 공장제하에서 추구되는 노동조직은 가내노동보다 “특별히 불유쾌한 생활양식을 강제”하였다(Tames 1971, p. 93).

연소노동이 가족경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 사회의 부모들이 자녀를 오늘날처럼 소비재로 생각하지 않고 5~6세 이후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재로 간주하였던 데 기인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히 18세기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의해 연령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회소가치”가 하락한 상황과, 또 한편으로는 당시 청교도 윤리의 영향으로 아동들을 “작은 성인”으로 대우했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아동들은 7세가 되면 그들의 행위에 관습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고 의식주 및 언행의 습관들도 그들이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근면히 일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Pinchbeck and Hewitt 1973).

아동들로부터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대하였던 반면 부모로부터는 자녀교육이나 부양, 또는 가혹행위의 절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 따라서 공장에 고용된 아동들을 확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할 제도적·사상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아동노동의 착취에 대한 낙관론의 대부분은, 인간사회에는 각자의 본분이 있게 마련이며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재가에 뒷받침된 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Pinchbeck and Hewitt 1973, p. 357).

1830년대 이전에 연소노동이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몇몇 낙관론자들의 변명과는 달리 수많은 자료들이 한결같이 이들 아동노동자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고독한 착취를 말하여 주고 있어 “영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 중의 하나”로 지칭될 정도이다(Thompson 1963, p. 349).

2) 공장입법

아동노동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공장입법을 야기한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근대적 산업사회조직에 기여하였다. 공장제 노동조직은 긴 작업시간, 연소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비교적 전통적인 양상뿐 아니라 감독과 규율, 도시생활의 혼합, 단조로움, 그리고 공장주와 노동자의 계급적 분화 등의 새로운 긴장을 내포하고 있어 대중으로부터 또 의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최초의 공장규제법인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1802)은 의학과 인도주의 정신의 영향하에 제정된 것으로, 구빈법 당국에 의해 농촌 공장주에 넘겨진 소위 구빈원 도제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식사시간을 제외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의 야간작업을 금지하였다(Frazer 1984, chap. 3).

증기기관의 사용이 늘어나자 면직공장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인근 어린이들을 자유로이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15년부터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부가적인 법제화를 제안, 로버트 필이 다시 이를 추진하였는데, 10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10시간 반으로 제한하고 한 시간 반의 식사시간과 30분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1816년 하원 청문회와 1818년 및 1819년 토리당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끄는 두 차례의 상원 청문회를 거쳐 통과된 면직공장규법(Peel's Act)은 단지 9세에서 16세까지의 1일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한 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1819년의 법은 거의 유명무실하였으며 실제로 이 법이 유효한 동안 오직 두 건의 범죄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Thomas 1970).

이에 북부의 성공회 사제, 의사, 상인, 노동자들 집단이 대대적인 선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요구는 위협시되어 공개적 증언을 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요주의인물 명부에 올랐다. 급진적인 휘그당 의원 홉하우스(Hobhouse)는 1825년에 연소자 11시간 노동안을 제출하였으나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등 1819년의 공장법을 재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1830년대 초가 되면 이와 같이 법제상으로는 면직공장 근로어린이들의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들 법률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또한 면직공장 이외의 공장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각종 논란 및 사회운동이 계속되었다. 지도

층이 주로 토리당으로 구성되고 종교적으로는 성공회의 색채가 강한 “공장운동”은 비참한 연소 공장노동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열기였으나, 동시에 노동시간의 일반적인 감소를 염원하였고, 이 공장운동의 궁극적 승리는 정부의 자유방임적 태도에 일격을 가했다.

새들러의 법안이 상정되고 「공장규제법특별위원회보고서」가 간행된 것은 이러한 계제에서였다. 그러나 정치적 풍토가 거의 반 세기간의 토리당의 지배에서 휘그당 쪽으로 극적으로 바뀌고 새들러가 선거에 패배하게 되자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상적·정치적 풍토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18세기가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18세기의 지배적 사상은 토지재산에 기본을 둔 상층 귀족의 온정주의적 보호, 후원 및 규제에 의해 사회가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본주의의 정착과 함께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덕경제”의 이념을 대체해 가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휘그당은 부르주아들의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반면 토리당은 지주귀족의 이해를 대변하였고, 토리당의 일파인 하이 토리파(high Tory)는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으로써 자유경쟁의 병폐를 치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Perkin 1969).

지주계급에 대한 부르주아 및 하층민의 40년간에 걸친 의회 개혁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빈곤층을 제외한 부분적 참정권 확대에 그침으로써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특히 리즈(Leeds) 선거에서 토리당 온정주의의 기수인 새들러가 낙선한 일은 공장

입법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새들러 법안에 대신하여 다음해 「공장조사위원회보고서」에 입각한 휘그당 지도자 엘토프 경(Lord Althorp)의 온건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1833년의 공장법은 공장운동과 부르주아 정치사상의 타협안이었는 데 여기서 자유방임적 이상이 이제 지배적으로 되었으면서도 노동시장에서 자유계약 원리의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 흥미롭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실상 효력을 가진 최초의 공장법이었으며 수력 혹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견직을 제외한 모든 직물공장에서 9세 미만의 어린이의 고용을 금하였다. 또한 9세에서 12세에 이르는 공장어린이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 1주 48시간으로, 13~18세의 미성년노동을 하루 12시간 1주 72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들을 교육시킬 책임을 공장에 부과하였다. 그러나 견직공장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제한을 규정하였다. 새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1833년의 공장법의 특징은 그 이전의 여러 공장규제법과는 달리 국왕이 4명의 공장검열관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공장법 조항의 이행을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1833년의 공장법은 근대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인 남성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도 이와 같은 아동노동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공장운동, 미성년 및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려는 10시간 노동운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1844년의 공장법은 소위 2부제라 하여 직물공장의 어린이로 하여금 하루의 절반은 6시간 반 이내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다니게끔 규정하였다. 동시에 고용 가능한 어린이의 최소연령을 8세로 낮추었으나 1874년에 10세로, 20세기에 오면 12

(표 11) 영국 노동관계 법령의 역사 요약

1782	법	구빈 대상자의 산업노동을 촉진.
1788	법	굴뚝소제 아동의 노동조건 개선.
1796	Pitts안	구빈원아동을 위한 '산업학교' 개설
1802	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률(Peel)	면직 및 모직공장의 구빈원도제의 노동조건 개선.
1813	법	도제교육의 법적 필요성을 철폐.
1819	면직공장규제법(Peel)	최저연령을 9세로, 최대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1825	Hobhouse안	1819년법의 회피를 방지함.
1831	Hobhouse안	면공장 노동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
1832	개혁법	도제교육의 필요성을 비공업 부문에서도 철폐
1833	아동노동규제법(Althorp)	노동관계법률의 집행을 강화.
1835	지방자치법	자유민의 배타적 권리를 철폐.
1842	광산법	광산의 여성노동을 금지.
1844	공장법	면직공장의 아동노동을 하루 6시간 반으로 제한.
1847	10시간 법안	여성 및 미성년노동을 10시간으로 제한.
1850	법	10시간법의 회피를 방지.
1853	법	1847년 법에 아동에 관한 조항을 포함.
1867	공장규제법 확대법	공장법을 모든 제조업에 확대 적용.
1876	교육법	10세까지 의무교육 실시
1878	통합법	모든 기존 노동규제법을 단일 법으로 통합정리.
1893	법	공장 및 작업장의 최소고용연령을 11세로 규제.
1899	법	의무교육을 14세까지로 확장.
1902	법	최소고용연령을 12세로 올림.

자료: Hutchins and Harrison(1903) 및 Frazer(1984)에서 작성.

세로 변화하게 된다(공장의 연소노동자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표 11]을 참조하라).

공장법 특히 1833년 엘토프 경의 공장규제법을 둘러싼 논의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법제정의 해석이요,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복지증진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공장법의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연소노동자의 상태가 1833년 법 통과 이후 급격히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현신적인 공장검열관과 사회개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공장주들이 이윤을 크게 감소시키는 공장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공업화의 최악의 피해로부터 보호되었다. 규제가 없었을 경우에 증가하였을 연소노동이 감소하였으며, 19세기 초반 공장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어린이들의 참상과 동세기 후반의 상태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앨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 관찰하기에도 “금세기 초 공장노동의 조건은 지나치게 건강에 해롭고 모든 공원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억압적이었다. 그러나 공장법과 교육법은 공장으로부터 이러한 악습의 극단적인 면모를 제거하였고 많은 폐단은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작업장에서만 아직 잔존할 뿐이었다”(Marshall 1920, p. 198). 마샬의 의견은 공장법 연구자의 대부분이 받아들인 것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영국 사회정책 교과서에도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이 표현되고 있다. “엘토프 경의 공장법은 사회정책사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이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착취당하는 부류를 보호할 압도적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식한 것이다. 근로어린이들의 복지를 보장할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나 고용자보다 국가 자체에 집중된

다. 이러한 원리의 발달뿐 아니라 이의 집행력이 최초의 효율적인 법령에 의해 제공되었다(Frazer 1973, p. 21).

당대의 사회운동가들의 표현을 빌면 “1833년의 공장법은 지고의 선을 창출하였다. 이는 당시 필요불가결한 법제화를 방해하고 있던 사회악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였다”(Honer 1840) 또한, “과도한 노동은 한때 공장제도에 특유한 종류의 질병을 초래하였으나 현재의 법령에 의하여 이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던 아이들도 공장법의 규제하에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다”(Baker 1854, 각각 Tames 1971, pp. 126, 182에서 재인용). 장기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수정과 또한 작업장 및 교육에 관한 법령들에 의한 보완으로 어린이들은 공장의 울가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연소노동자의 경악할 만한 실태에 비추어 보아 공장법을 단지 그 효과의 미미함으로 매도하는 것은 퇴보적이고 패배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기술혁신에 의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연계가 약화되고 있던 시기에 1833년의 공장법은 공장 내에서 아이들이 부모 곁에 온종일 붙어 있을 가능성을 명확히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다. 동 법규는 “가족경제로부터 정규교육의 분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Smelser 1959, pp. 294-95). 당시 영국이 근대적 의무교육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볼 때 공장법의 의미는 새삼 지대하다. 아마도 시드니 웹의 서술대로 공장입법은 공립초등학교나 경찰제도보다 더 광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Webb 1966, p. viii). 노동계층의 교육을 등한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겠지만 영국에서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시행된 것

은 19세기 말의 일이다. 실제로 공장법이 초등교육의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법제로써 의무교육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33년 공장법 제정과정의 해석은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가장 뚜렷하고 공통된 견해는 널리 알려진 사회적 병폐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입장으로, 정부가 "특히 자비로운 대중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된" 결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즉 "오슬러, 새들러와 단기간 존속하였던 위원회 등이 대중적 압력을 강력하게 집성하여 의회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MacDonagh 1973, p. 5, Frazer 1973, p. 20).

영국역사에서, 노동계층과 중산층이 각기 또는 힘을 합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던 1830년대와 40년대처럼 정치적·사회적으로 소란하고 긴장된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1829년에서 1832년까지 양 계층의 불만은 의회개혁을 위한 선동으로 결합하였는데, 대중은 폭동과 시위를, 상공인들은 경제적 배척운동을 수단으로 삼았다. 1832년의 정치적 개혁으로 급진적 중산층의 요구가 일부 충족되자 노동운동만이 남아 홀로 분투하였다. 1837년의 공황 이후에는 중산층의 불만은 곡물법 폐지운동으로 재생하였고, 노동대중의 시위는 인민현장을 위한 차티스트 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번에는 양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또한 상반되는 입장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긴장이 대부분은 절망상태의 노동계층과 상공업자의 이합집산에서 기인했던

것이며 그들의 움직임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차티즘의 붕괴와 함께 노동계층의 정치운동은 19세기 말까지 잠잠해졌고 조합주의에 입각한 단편적인 경제적 요구들이 이를 대신하였다. 노동자계층의 의식과 귀속감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부침하였던 것이다(Thomis 1974; Rule 1986; Hunt 1981). 공장운동과 공장법의 제정도 이러한 배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영국 산업혁명기의 근로어린이들은 공장제도 성립 초기의 결정적 시점에서 단기적 노동공급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시간규율과 노동윤리가 고취된 근대적 산업노동자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연소노동자들은 대규모의 지속적이고도 혹독한 비인간적 착취를 당하여 그 참상을 비길 데가 없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대중적 요구의 반응으로 부르주아 정부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아동노동의 고용을 규제하는 공장법은 근대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